

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1020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8월 30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19년 8월 7일 송아량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 870), 서울특별시장의 제출한 「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 905),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제289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(2019.8.30.)에 상정해 각각 심사한 결과,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조례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노동권익을 보장하고, 현재 운영 중인 노동조사관제도의 조사수행 권한과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권고 및 후속조치, 이의신청 등의 규정을 구체화하려는 것임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노동자의 정의에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근로자와 함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규정함(안 제2조제1호).
- 나.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사항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 환경 개선과 권익 증진 방안을 추가함(안 제6조제2항제5호).
- 다. 노동조사관의 조사수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
 - (1) 현장조사, 자료제출 및 출석·진술 요구(안 제23조제1항)
 - (2) 외부전문가 등의 조사 참여(안 제23조제2항)
- 라.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권고 및 후속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
 - (1) 시정권고 사항의 통지 및 공포(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)
 - (2) 시정권고 조치결과에 대한 시장 보고(안 제24조제3항)
 - (3) 시정권고의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·점검(안 제26조)
- 마. 시정권고 사항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
 - (1) 이의신청 및 그 처리 절차(안 제25조)
 - (2)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노동조사소위원회 신설(안 제20조제1항)

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노동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에 따른 근로자
 - 나. 계약의 형식과 관계 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

제6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 및 권익 증진 방안

제13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2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심의

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위원회는 제13조제2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노동조사소위원회를 두며, 이 경우 노동조사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.
-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노동조사소위원회 이외에도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.

제22조 앞에 “제4장 노동조사관”을 삽입한다.

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2조(설치 및 조사범위) ① 시장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조사관(이하 “조사관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.

1.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2.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연구소, 민간기업의 노무부서, 노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에서 노동 관련 활동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노동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

③ 조사관은 신고인의 신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(이하 “조사대상 기관”이라 한다)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. 다만,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.

1. 시의 본청(과·담당관)·소속기관·합의제행정기관
 2. 시 소재 자치구(시의 위임사무와 구청장이 해당 자치구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)
 3. 시 산하 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
 4. 시의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(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)
- ④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(조사수행) ① 조사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2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·문서열람·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·자료제출 및 출석·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조사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24조(시정권고 및 후속조치) ① 시장은 조사관의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사결과 및 그에 따른 시정권고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인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

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,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(조사대상기관의 장이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 한다)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5조(이의신청) ① 조사대상기관의 장이 시정권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사소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고인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6조(시정권고 이행실태의 확인·점검) 조사관은 제24조에 따른 시정권고의 이행실태를 확인·점검할 수 있다.

제27조(시행세칙)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노동자”란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제6조(노동정책 기본계획) ① (생략)</p> <p>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설〉</p> <p>5. (생략)</p> <p>③、④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노동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에 따른 근로자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계약의 형식과 관계 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노동정책 기본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 및 권익 증진 방안</p> <p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③、④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설치 및 기능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설〉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13조(설치 및 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제2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심의</u>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
<p>제20조(소위원회) ① <u>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설〉</p>	<p>제20조(소위원회) ① <u>위원회는 제13조제2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노동조사소위원회를 두며, 이 경우 노동조사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.</u></p> <p>② <u>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노동조사소위원회 이외에도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〈신 설〉</u></p> <p>제22조(노동조사관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조사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</u> 2. <u>자치구(시의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.)</u> 3. <u>시 산하 투자·출자·출연기관</u> 4. <u>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</u> <p>④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〈신 설〉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4장 노동조사관</u></p> <p>제22조(설치 및 조사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조사관은 신고인의 신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(이하 “조사대상기관”이라 한다)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. 다만,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시의 본청(과·담당관)·소속기관·합의제행정기관</u> 2. <u>시 소재 자치구(시의 위임사무와 구청장이 해당 자치구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)</u> 3. <u>시 산하 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</u> 4. <u>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(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)</u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3조(조사수행) ① <u>조사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2조 제3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〈신 설〉</p>	<p><u>조사·문서열람·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·자료제출 및 출석·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조사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24조(시정권고 및 후속조치) ①</u></p> <p><u>시장은 조사관의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사결과 및 그에 따른 시정권고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인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<u>③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,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(조사대상기관의 장이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 한다)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권고에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	<p><u>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제25조(이의신청) ① 조사대상기관의 장이 시정권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사소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고인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26조(시정권고 이행실태의 확인·점검) 조사관은 제24조에 따른 시정권고의 이행실태를 확인·점검할 수 있다.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27조(시행세칙)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